

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2. 23.(금)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4. 2. 1. 정윤주 의원 외 13인 발의(의안번호 256호)
나. 회부일자 : 2024. 2. 14.
다. 상정일자 : 제30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2024. 2. 20. 상정 · 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정윤주 의원)

가. 제안이유

현재 가사서비스 시장은 비공식 영역에 머물러 있어 가사서비스의 품질보증과 가사노동자의 보호에 미흡하므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내 가사서비스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가)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용어의 정의와 적용 대상,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제3조, 제4조)

- 다)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제7조)
- 라) 가사노동자의 노동 권익 향상 및 건전한 가사서비스 시장 조성을
위한 사업을 규정함(안 제8조)
- 마) 위탁근거를 규정함(안 제9조)
- 바)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 관련 사항 심의·자문을 서울특
별시 성북구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에서 대행함(안 제10조)
- 사)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11조)

다.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 다) 사전협의 : 일자리정책과
- 라) 입법예고 : 2024. 2. 2. ~ 2024 2. 6.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진만)

가. 제정 취지

- 본 제정안은 2022년 6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시행 2022. 6. 16.] [법률 제18285호,
2021. 6. 15., 제정])에 따라 가사노동자 지원을 위한 성북구 차원의 기본
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 전문기관 위탁, 위원회 설치 근거 등
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그동안 가사노동은 가정의 구성원이 금전적 대가 없이 행하는 비공식
노동으로 인식되어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됨에 따라 고
용·산재보험이나 최저임금, 휴게시간 등 노동관계법에 따른 보호를 받

지 못했음.

○ 그러나 직업소개소나 지인소개 등을 통해 이루어지던 가사노동자의 고용이 모바일 플랫폼을 통한 고용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증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해 가사서비스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가사노동을 공식적 노동으로 인정하여 노동관계법에 따른 보호를 받게 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였음.

이에 정부는 가사서비스의 품질 보증과 가사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를 위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과 가사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규정하는 내용의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음.

(2021.6.15.제정, 2022.6.16.시행).

나. 조문 검토

○ 안 제1조 : 조례안의 목적으로 **가사노동자¹⁾**의 고용개선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을 향상시켜 가사서비스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을 명시함.

○ 안 제3조 : 적용대상으로 성북구에 거주하거나, 성북구에서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노동자로 규정함.

○ 안 제6조 :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을 위해 정책의 목표 및

1)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 권익 향상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 및 건전한 가사서비스 시장의 조성을 위하여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및 가사근로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 제공

2. 가사근로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3. 가사근로자에 대한 고충처리, 상담 등 가사근로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방향, 부문별 추진전략, 재원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토록 하였음.

○ 안 제7조 :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관련 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가사노동자의 고용조건과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 안 제9조에서는 이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고 필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안 제8조에서는 가사노동자의 노동 권익 향상 및 건전한 가사서비스 시장의 조성을 위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 자문 및 정보제공, 가사노동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가사노동자에 대한 고충처리, 상담 등 권익증진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음.

○ 안 제10조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기존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 1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에서 대신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안 제11조에서는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과 지원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 종합 검토 결과

○ 본 제정안은 법의 시행에 맞춰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가사노동자의 고용상태를 개선하고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입법적 의의가 있으며,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회의록 참고
- 5. 토론요지: 회의록 참고
- 6. 심사결과: 원안가결
-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2. 23.(금)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4. 2. 1. 권영애 의원 외 19인 발의(의안번호 255호)

나. 회부일자 : 2024. 2. 14.

다. 상정일자 : 제30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2024. 2. 20. 상정 · 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권영애 의원)

가. 제안이유

급속히 상승한 청년 실업률을 감소시키고자 청년 1인 창조기업
우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자 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정의를 상위법에 근거하여 명확히 규정하며, 1인 창조기업의 범

위까지를 포괄함(안 제2조, 현행 제3조)

나) 1인 창조기업 육성·지원 계획에 청년 1인 창조기업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5조)

다) 구청장으로 하여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청년 1인 창조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함(안 제6조, 안 제13조, 안 제15조)

다.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다) 사전협의 : 일자리정책과

라) 입법예고 : 2024. 2. 2. ~ 2024. 2. 6.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진만)

가. 제정 취지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법률 제18961호, 2022. 6. 10., 일부개정)됨에 따라 청년

1인 창조기업 우대에 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함으로써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나. 조문 검토

○ 안 제2조 용어의 뜻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²⁾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³⁾로 명확히 규정하여, 청년 1인 창조

기업의 범위까지를 포함시켰으며, 상위법령의 일부개정에 따라 현행 제2조(1인 창조기업의 범위)를 삭제함.

- 안 제5조에서는 1인 창조기업 육성·지원 계획에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시켰으며,
- 안 제6조에서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청년 1인 창조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2., 2015. 2. 3., 2022. 6. 10.>

1.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청년 1인 창조기업”이란 39세 이하인 청년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1인 창조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제2조(1인 창조기업의 범위) 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그 주된 사업이 별표 1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15. 8. 3., 2022. 12. 9.>

② 그 주된 사업이 별표 1에 해당하는 업종이 아닌 업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한 1인 창조기업 인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그 업종 및 운영형태 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5. 8. 3., 2017. 7. 26.>

③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22. 12. 9.>

1. 「상법」에 따른 회사로서 39세 이하인 청년(이하 이 조에서 “청년”이라 한다)이 그 회사의 대표권 있는 임원(이하 이 조에서 “회사대표”라 한다)으로 등기되어 있는 회사. 다만, 회사대표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청년인 회사대표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수가 청년이 아닌 회사대표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보다 많은 회사로 한정한다.

2. 청년이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다. 종합 검토 결과

- 낮아진 취업률과 경기 침체의 악조건으로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청년들의 창업률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청년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함으로써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39세 이하인 청년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1인 창조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청년 1인 창조기업”으로 정의하는 한편, 지식서비스 거래 지원, 기술개발 지원,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해외진출 지원 등 각종 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청년 1인 창조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2022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2. 23.(금)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4. 2. 1. 김육영 의원 외 12인 발의(의안번호 254호)

나. 회부일자 : 2024. 2. 14.

다. 상정일자 : 제30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2024. 2. 20. 상정·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육영 의원)

가. 제안이유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기준을 정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원칙을 규정함(안 제4조의2)

나)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 결과를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함(안 제16조)

다.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
-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 다) 입법예고 : 2024. 2. 2. ~ 2024. 2. 6.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진만)

가. 제정 취지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성북구 자원순환체계 점검 및 시민 참여형 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모임’ (대표 정윤주 의원)의 활동 결과에 따라 김육영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된 안건으로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4)에 따라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기준

4)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 ⑧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0. 7. 23., 2013. 7. 16., 2014. 1. 21., 2015. 1. 20., 2020. 5. 26.>
 -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를 계산하여야 하며, 최초의 원가계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서 규정하는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하여야 한다.
 -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주민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포함한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실적 평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3. 제2호에 따라 대행실적을 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평가일부터 6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4.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내용을 계약일부터 6

을 정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나. 조문 검토

- 안 제4조의2에서는 평가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며, 평가는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평가 항목이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하며, 그 결과가 공개되도록 하는 평가원칙을 신설함.
- 안 제16조에서는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 결과를 구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도록하여 대행업체 평가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음.
-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일부 잘못된 표현을 개정함.다 수립·시행토록 하였음.

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5. 제4호에 따른 대행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는 계약만료 후 6개월 이내에 대행비용 지출내역을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6.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행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가. 「형법」 제133조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6조 또는 제357조(제347조 및 제356조의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벌금형의 경우에는 300만원 이상에 한정한다.)

7.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제6호 각 목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계약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 종합 검토 결과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원칙을 규정하고 평가 결과를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2. 23.(금)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4. 2. 1. 정해숙 의원 외 11인 발의(의안번호 252호)

나. 회부일자 : 2024. 2. 14.

다. 상정일자 : 제30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2024. 2. 20. 상정·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정해숙 의원)

가. 제안이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한자어나 일본어식 용어, 전문용어 등의 어려운 법령용어를 쉬운 용어로 변경하고 삭제된 조항을 정리하여 조례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오수, 분뇨,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

나) 제13조(수수료의 가산금) 규정을 삭제

다) 제14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를 삭제

다.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하수도법」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다) 입법예고 : 2024. 2. 2. ~ 2024. 2. 6.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진만)

가. 제정 취지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성북구 자원순환체계 점검 및 시민참여형 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모임’ (대표 정윤주 의원)의 활동 결과에 따라 정해숙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된 안건으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한자어나 일본어식 용어, 전문용어의 변경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쉬운 용어로 변경하고, 삭제된 조항을 정리하여 조례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임

나. 조문 검토

- 안 제1조(목적)⁵⁾을 간결하고 알아보기 쉽게 정리하였으며,
- 안 제2조에서는 오수, 분뇨,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 하여 정의에 대한 혼란스러움을 방지하고자 하였음.
- 안 제13조(수수료의 가산금)은 조례의 가산금⁶⁾ 규정과 상위법인 「하수

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내에서 발생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 청소 등 분뇨의 적정처리를 위한 수집·운반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6) 제13조(수수료의 가산금)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 기한내에 완납

도법」 제73조7)의 가산금 관련 규정이 상이하여 불필요한 오해와 혼란을 방지하고자 삭제하였음.

○ 그 밖에 삭제된 조항을 정리하여 조례의 21개 조항을 11개 조항으로 축소하여 조례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함.

다. 종합 검토 결과

○ 본 전부개정안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어려운 법령용어를 쉬운 용어로 변경하고, 삭제된 조항을 정리하여 조례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에 위배되지 않은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하지 아니할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7) 제73조(강제징수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을 내야 하는 자가 사용료등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등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사용료등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에 상응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까지 사용료등과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21. 1. 5.]

서울특별시 성북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2. 23.(금)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4. 2. 1. 권영애 의원 외 13인 발의(의안번호 251호)

나. 회부일자 : 2024. 2. 14.

다. 상정일자 : 제30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2024. 2. 20. 상정 · 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권영애 의원)

가. 제안이유

1인 가구 증가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 및 소규모 구매와 배달이 늘어나면서 1회용품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여,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추진계획의 수립을 매년으로 규정(안 제4조)

나)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규정(안 제7조)

다) 다회용품 활용 시설의 설치 및 지원 사항 신설(안 제10조의2)

다.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다) 입법예고 : 2024. 2. 2. ~ 2024. 2. 6.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진만)

가. 제정 취지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성북구 자원순환체계 점검 및 시민참여형 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모임’ (대표 정윤주 의원)의 활동 결과에 따라 권영애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된 안건으로,
1인 가구의 증가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 및 배달이 늘어나면서 1회용품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여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나. 조문 검토

○ 안 제4조에서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를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여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7조에서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 년

‘실시할 수 있으며’를 ‘실시해야 하며’로 임의 조항에서 강행 조항으로 강화 시켰음.

- 안 제10조의2⁸⁾를 신설하여 다회용품 활용 시설의 설치 및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다. 종합 검토 결과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해 일부 조례를 개정하고, 다회용품 활용 시설의 설치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8) 제10조의2(다회용품 활용 시설의 설치 및 지원)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회용품 활용 시설을 설치 또는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2. 23.(금)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4. 2. 1. 고영옥 의원 외 11인 발의(의안번호 253호)

나. 회부일자 : 2024. 2. 14.

다. 상정일자 : 제30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2024. 2. 20. 상정 · 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고영옥 의원)

가. 제안이유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기존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순환이용 및 처분에 초점을 두고 있는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시행 2024. 1. 1) 됨에 따라 일부 조문을 변경하고, 삭제된 조항을 정리하여 조례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조문 정비(안 제1조)
- 나) 「자원순환기본법」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변경(안 제4조)
- 다)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변경(안 제7조)
- 라) 제6조,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삭제

다.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 다) 입법예고 : 2024. 2. 2. ~ 2024. 2. 6.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진만)

가. 제정 취지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성북구 자원순환체계 점검 및 시민 참여형 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모임’ (대표 정윤주 의원)의 활동 결과에 따라 고영욱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된 안건으로, 2022년 12월 31일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시행 2024. 1. 1.] [법률 제19208호, 2022. 12. 31., 전부개정]) 됨에 따라 일부 조문을 변경하고, 기 삭제된 조항을 정리하여 조례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임.

나. 조문 검토

- 안 제1조 목적⁹⁾ 조문을 간결하게 정비하였으며,
- 안 제4조에서는 「자원순환기본법」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변경함.
- 안 제7조에서는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개정하였으며,
- 제6조, 제8조부터 제14조까지를 삭제하였음.

다. 종합 검토 결과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기존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순환이용 및 처분에 초점을 두고 있는 「자원순환기본법」이 생산·소비·유통 등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이용 촉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 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기 삭제된 조항을 정리하여 조례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순환기본법」, 「제품의 포장재질·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폐기물관리법」 및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2. 23.(금)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 2. 1. 이용진 의원 외 13인 발의 (의안번호 257호)
나. 회부일자 : 2024. 2. 14.
다. 상정일자 : 제30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2024. 2. 19. 상정 · 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이용진 의원)

가. 제안이유

성북구의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안내센터 설치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가) 관광안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의2)
나)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안 제9조, 제12조, 제14조 ~ 제15조)

다.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관광진흥법」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다) 사전협의 : 문화체육과

라) 입법예고 : 2024. 2. 2. ~ 2024. 2. 6. : 의견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진만)

가. 제정 취지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구의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안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나. 조문 검토

- **안제5조의2**¹⁰⁾에서는 관광객에 대한 안내, 홍보 및 각종 편의 제공을 위한 관광안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안 제9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하였음.

다. 종합 검토 결과

- 우리구는 이미 관광안내센터와 유사한 성격의 ‘성북역사문화센터’¹¹⁾

10) 제5조의2(관광안내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관광객에 대한 안내, 홍보 및 각종 편의의 제공을 위하여 관광안내센터(이하 “안내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안내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과 명칭, 위치는 구청장이 정한다.

③ 안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 관광안내 및 홍보
2.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3. 문화관광 행사, 전시 및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1) 성북역사문화센터

- 사업기간 : 2020. 3. 3.(시설개관)

가 2020년 3월부터 운영되고 있으나, 역사문화센터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활동 내용도 성북구 전체에 대한 관광안내센터의 기능보다는 한양도성, 선잠단지, 간송미술관, 성북동 문화유산 등에 대한 탐방 및 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본 일부개정안에서 신설하는 관광안내센터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음.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관광안내 및 홍보, 각종 자료의 수집 및 관리, 관광프로그램 운영 등의 관광안내센터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우리구의 관광산업 발전과 관광객 유치를 위해 우리구 전체의 관광자원을 발굴 개발하고, 홍보할 수 있는 관광안내센터를 검토하기 바라며, 본 일부개정안은 우리 구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것으로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 사업위치 : 성북구 성북로 21길 31
 - 규 모 : 대지 260㎡(79평), 연면적 173㎡(52평), 지상 2층
 - 운영방법 : 구청 직영
 - 운영시간 : 연중무휴 09:00~18:00(설, 추석연휴 제외)
 - 운영인력 : 기간제 근로자 3명
 - 사 업 비 : 총 122,162천원(구비)
 - 사업내용 : 성북동 역사문화관광정보 발굴 및 안내, 각종 프로그램 진행 및 대관 등

□ 2023년 추진실적

- 성북동 역사문화 등 관광정보 발굴 및 홍보
- 각종 프로그램 진행(프로그램 총 참여자 : 189명, 수입 : 590천원)
 - 2023. 4. : 외국인과 함께하는 글로벌 도보 탐방 진행(4회, 44명 참여)
 - 2023. 5. :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하는 글로벌 도보 탐방 진행(3회, 27명 참여)
 - 2023. 8. : 여름방학 체험 프로그램 진행(4회, 57명 참여)
 - 2023. 10. : 가을 맞이 도보 탐방 진행(2회, 16명 참여)
 - 2023. 12. : 겨울방학 체험 프로그램 진행(3회, 45명 참여)
- 관광객 방문 응대 및 각종 대관 진행
 - 이용실적
 - 누적방문객 : 총 18,397명
 - 대 관 : 총 137회(성북문화원, 성북선잠박물관, 고려대학교 등) / 수입1,210천원
 - 대관인원 : 총 1,479명

4. 질의 및 답변요지: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안

[정릉3동 주민센터 앞 부지 매입]

심 사 보 고 서

2024년 2. 23.(금)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 2. 5. 성북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248호)

나. 회부일자: 2024. 2. 14.

다. 상정일자: 제30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

【2024. 2. 21. 상정 · 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신신재 기획재정국장)

가.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1조 제1항에 의거 우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성북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임.

나. 주요내용

○ 정릉3동 주민센터 인근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내실있는 주민센터 건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우리구에서 취득할 중요재산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성북구의회 의결을 얻어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 관리계획 대상 재산

(단위: 천원)

사업명	소재지	구분	면적(㎡)	금액	비고
정릉3동주민센터 앞 부지 매입	성북구 정릉동 687-3	취득 (부지 매입)	토지 : 116㎡	1,230,000	매입
			건물 : 133.2㎡		

※ 부지 매입을 위한 탁상 감정 결과

- 평가업체 : (주)대일감정원, (주)대한감정평가법인
- 정릉동 687-3 : 1,235,272,400원(대일감정원), 1,230,310,400원(대한감정평가법인)

다.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1항(공유재산의관리계획)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공유재산의관리계획)
- 정릉3동주민센터 신축을 위한 매입 계획(구청장방침, 자치행정과-25525호, 2023.12.)

라. 추진배경 및 사업 필요성

- 정릉3동 주민센터는 신축 후 30년이 경과한 청사로서 시설 노후화에 따른 안전성 우려 및 협소한 공간으로 이용자 불편 민원 다수 발생
- 정릉3동 주민센터 신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청사부지 확충 필요

마. 동주민센터 현황

- 위치 : 정릉동 673-3(솔샘로1길 6-3)
- 건축연도 및 규모 : 1990년, 지하1층 ~ 지하3층(민원실, 강당 등)
- 면적 : 대지 578㎡(174.84평), 연면적 614.2㎡(185.79평)
- 용도지역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안전등급 : 2011년(정밀안전진단 C급 ⇒ B급으로 상향)

바. 매입계획

- 매입시 소요추정 예산액(안) : 1,230,000천원
- 위치 : 성북구 정릉동 687-3

- 부지규모 : 토지(116㎡) / 건물(133.2㎡)
- 재원조달 :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기금
- 계약방법 :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격 산술평균금액을 기준으로
토지 및 건물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입 추진 예정
- 기준가격 명세

구분	항목	소재지	면적(㎡)	㎡당 공시지가(천원)	기준가격(천원)
취득	토지 매입	성북구 정릉동 687-3	116	3,801	440,916
	건물 매입	성북구 정릉동 687-3	133.2		104,634
	합계	545,550천원			

※ 기준가격 :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면적, 주택은 개별(공동)주택가격,
그 외 건물은 시가표준액, 신축은 신축비

사. 추진경과

- 2021. ~ 2023.: 정릉3동주민센터 부지 매입 검토

아. 향후 추진일정

- 2024. 1. ~ 2. : 성북구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상정 및 구의회 관리계획안 제출
- 2024. 2. : 소유자와 부지 매매계약

자. 주관과 의견(자치행정과)

- 정릉3동 주민센터는 1990년 준공되어 내용연수가 30년이상 경과한 상태로 청사 시설이 많이 노후한 청사임
- 정릉3동 주민센터 신축으로 동 행정상으로는, 민원팀과 복지팀 업무 공간의 구분, 회의실 확대, 휴게실 마련, 화장실 등 공용면적 확보 등을 통해 공무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그러므로 정릉3동 주민센터의 원활한 신축을 위해 주변 부지를 확충할 필요가 있고 주민센터 앞 부지매입으로 추후 주차장 진입로 등 활용 가능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진만)

○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정릉3동 주민센터 인근 부지를 추가 매입하여 내실있는 주민센터 건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성북구 정릉동 687-3 (토지116㎡, 건물 133.2㎡)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¹²⁾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제1항¹³⁾

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성북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임.

○ 정릉3동 주민센터 현황

- 위 치 : 성북구 정릉동 673-3 (솔샘로1길 6-3)
- 건축연도 : 1990년
- 면 적 : 부지면적 578㎡(175평), 연면적 614.2㎡
(186평, 지하1층/ 지상3층)
- 용도지역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안전등급 : 2011년(정밀안전진단 C급→B급으로 상향)

○ 부지매입계획

- 위 치 : 정릉동 687-3
- 부지규모 : 토지 116㎡ / 건물 133.2㎡
- 소요예산 : 12억3,000만원

12)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3)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구청장이 다음연도 예산편성전까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고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구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재원조달 :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기금
- 계약방법 :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격 산술평균금액을

기준으로 토지 및 건물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입 추진

○ 정릉3동 주민센터는 1990년 신축 후 34년이 경과한 청사로서 시설 노후화에 다른 안전성 우려와 협소한 공간으로 다수의 불편 민원이 발행하고 있는 곳으로 주민센터 신축사업을 추진과 추후 주차장 진입로 등 활용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주민센터 입구의 부지 매입이 필요한 상황임.

○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정릉3동 주민센터 건립을 추진하기 위한 대상지 부지 매입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¹⁴⁾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제1항¹⁵⁾에 따라 우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성북구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14) 제10조(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계획적으로 관리·처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5)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구청장이 다음연도 예산편성전까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고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구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07. 10, 2019.9.26, 2022.11.3.)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재산관리 전담부서에서 작성한다. 다만, 특별회계 소관재산의 관리계획은 재산관리 전담부서의 협조를 받아 특별회계관리 전담부서에서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09. 07. 10, 2019.9.26.)

③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 (신설 2022.11.3.)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 1건당 2천제곱미터

4. 질의 및 답변요지: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